

# 제안 설명

(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)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입니다.

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안건은

○ 최근 근로학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그 주요 내용으로

○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해계획의 수립과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○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시수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